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06
------------	-------

발의연월일 : 2017. 12. 28.

발의자 : 박덕흠 · 김태흠 · 권석창
홍문표 · 김규환 · 김성원
이만희 · 김승희 · 윤종필
심재철 · 김성찬 · 이은권
이채익 · 박명재 · 강석진
정용기 · 김광림 · 안호영
이용호 의원(19인)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댐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다.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과 이에 따른 댐 및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사업시행자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의 출 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두며,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사.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과 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 담하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자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 주변지역과 댐 건설 및 운영·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으로서 댐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지역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 강구·시행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

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 수질개선사업
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사.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댐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경제진흥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댐 및 주변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댐수탁관리자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경제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댐 및 주변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 관리자는 사업시행자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사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생태마을 내 편의시설 설치의 시행자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의 시행자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 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댐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해제 등) ① 지정권자는 제8조에 따

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

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

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는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별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별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사업의 시

행을 위한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8조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자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지정권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활성화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23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 중 기반시설 설치를 제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③ 기반시설 중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설비·정보통신설비·용수시설·항만·선박·환경기초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유지관리재원 등의 조성·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등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지도·감독 등) 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행정처분) 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활성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지정권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지정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땅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5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유효 기간 만료 당시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